

#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uses of Allocation of Costs in the Incoterms 2010

전순환(Soon-Hwan Jeon)

중부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개정내용	참고문헌
III.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분석	Abstract
IV.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문제점	

## 국문초록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와 B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비용분배조항이 종전의 Incoterms 2000의 비용분배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용분배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적재비용과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인코텀즈 2010, 비용의 분배, 계약에의 충당, 국제상업회의소, 정형거래조건

## I. 서론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하여 1936년에 제정된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및 2010년에 개정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특히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의 등록상표(trade mark)로서, 이 규칙의 A6조와 B6조에서는 매도인의 비용의 분배와 매수인의 비용의 분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Incoterms 2010 규칙의 A6조와 B6조에서는 물품의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고, 물품이 A4에서 예상된 대로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분배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과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물품이 A4에서 예상된 대로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과 관련하여, A6조 및 B6조에 언급된 비용뿐만 아니라 A6조 및 B6조를 제외한 기타 A1조에서 A10조 및 B1조에서 B10조에 언급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각의 비용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비용분배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당사자의 비용분배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비용분배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차별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비용분배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실무자들이 Incoterms 2010 규칙에서 각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 규칙의 모든 규칙의 A6조 및 B6조에서는 Incoterms 2000의 모든 규칙의 A6조 및 B6조의 “Division of costs(비용의 분기)”라는 표제를 “Allocation of costs(비용의 분배)”라는 표제로 변경하면서,<sup>1)</sup> 매도인의 비용분배조항인 A6조와 매수인의 비용분배조항인 B6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1. 매도인의 비용분배조항의 개정내용

매도인의 비용분배조항인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에서 행해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물품인도시기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에서는 물품인도시기와 관련하여, Incoterms 2000의 모든 규칙의 A6조의 “until such time as they have been delivered...”라는 표현에서 “such time as”를 삭제하였으나, 내용상의 변경은 없다.

#### 2) 매도인의 비용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조항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에서는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Incoterms 2000의 모든 규칙의 A6조의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B6(B6의 규정을 준수하지만)”라는 표현을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as envisaged in B6(B6에서 예상된 대로 매수인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외의)”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나, 내용상의 변경은 없다.

#### 3) 수출통관비용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다음의 규칙의 A6조에서는 매도인의 수출통관비용과 관련한 문장표현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첫째, Incoterms 2000의 FCA, FAS, 및 FOB규칙 A6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the costs of

1) 전순환,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사)한국무역연구원, 2010.12, p.593.

customs formalities(통관절차의 비용)”라는 표현은 “the costs of customs formalities necessary for export(수출을 위한 통관절차의 비용)”라는 표현으로 변경되면서 매도인의 지급의무는 수입통관절차의 비용이 아닌 수출통관절차의 비용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Incoterms 2000의 CPT와 CIP규칙 A6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all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라는 표현은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으나 내용상의 변경은 없다.

#### 4) 타국통과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CPT, CIP, DAT, DAP, DDP, CFR 및 CIF규칙의 A6조에서는 매도인의 타국통과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문장표현방법으로서 Incoterms 2000의 이들 규칙의 A6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라는 표현을 “the costs for their transport through any country”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 5) 양륙비용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DAP와 DDP규칙의 A6조에서는 매도인의 양륙비용지급의무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2. 매수인의 비용분배조항의 개정내용

매수인의 비용분배조항인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B6조에서 행해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물품인도시기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B6조에서는 물품인도시기와 관련하여, Incoterms 2000의 모든 규칙의 A6조의 “in accordance with A4”라는 표현을 “as envisaged with A4”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 2) 비용의 분배에 필요한 계약의 총당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B6조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의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부담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서 계약에 총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에 총당”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Incoterms 2000의 모든 규칙의 B6에 규정되어 있었던 “provided, however, that the good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 that is to say, clearly set aside or otherwise identified as a contract goods”라는 표현에서 “however”,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 that is to say” 및 “set aside or otherwise”를 삭제함으로써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a contract goods(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와 같이 간소화하였다.

## 3) 수출입통관비용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 (1) 수출통관비용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EXW규칙의 B6조에서는 수출통관절차의 협조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매수인의 상환의무규정과 관련하여, Incoterms 2000의 EXW규칙 B6조의 “in rendering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A2”라는 표현을 “in providing assistance as envisaged in A2”라는 표현으로 개정하였으며, FCA, CPT, CIP, FAS, FOB, CFR 및 CIF규칙 B6조에서는 매수인의 비용부담의 원칙에 관한 예외규정으로서 수출통관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다는 “except, where applicable, the costs and customs formalities necessary for export, as well as all duties and taxes and other charges payable upon export as referred to in A6 b)”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통관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매수인의 지급의무에서 명확히 제외하였다.

### (2) 수입통관비용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FCA, CPT, CIP, FAS, FOB, CFR 및 CIF규칙 B6조에서는 매수인의 수입통관비용의 지급의무규정과 관련하여 Incoterms 2000의 이들 규칙의 B6조의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라는 표현을 “the costs for their transport through any country”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나, 내용상의 변경은 없다.

#### 4)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B6조의 매수인의 운송인 또는 본선의 지정의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본선의 물품수취의무, 매도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에 대한 매수인의 지급의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수인의 운송인지정의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물품수취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한 매수인의 지급의무규정과 관련하여, Incoterms 2010의 FCA규칙의 B6조에서는 Incoterms 2000의 FCA규칙의 B6조의 “in accordance with A4”를 “as envisaged with A4”로, “because the party”를 “a carrier or person”으로, “into his charge at the agreed time”을 “into its charge”로 각각 변경하였다.

둘째, 매도인에 대한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한 매수인의 지급의무규정과 관련하여, Incoterms 2010의 CPT·CIP·CFR·CIF규칙의 B6조에서는 Incoterms 2000의 이들 규칙의 B6조의 “all”을 “any”로, “he”를 “the buyer”로, “in accordance with B7 for the goods”를 “in accordance with B7”으로, “period fixed”를 “agreed period”로 각각 변경하였으나 내용상의 변경은 없다.

셋째, 매수인의 수입통관의무(DDP의 경우 수입통관협조의무) 또는 매도인에 대한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한 매수인의 지급의무규정과 관련하여, Incoterms 2010의 DAT·DAP·DDP규칙 B6조에서는 Incoterms 2000의 CPT규칙 B6조의 “all additional costs incurred”를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seller”로, “he”를 “the buyer”로, “his”를 “its”로 각각 변경하였으나 내용상의 변경은 없다.

#### 5) 양륙비용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내용

Incoterms 2010의 DAP와 DDP규칙의 B6조에서는 매수인의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지급의무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all costs of unloading necessary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이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지 있지 않는 한, 목적지에서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취하기 위한 모든 양륙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6) 추가보험비용 지급의무규정의 신설

Incoterms 2010의 CIP와 CIF규칙의 B6 f)조에서는 “the costs of any additional insurance procured at the buyer’s request under A3 and B3(A3 및 B3에 따라 매수인의 요청으로 취득된 추가비용)”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A3조 및 B3조에 따라 매수인의 요청으로 취득된 추가보험의 비용은 매수인의 지급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Ⅲ.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분석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 a)조 본문 및 B6 a)조 본문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예상된 대로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인도<sup>2)</sup>시기를 기준으로 물품의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 후부터는 매수인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A6 b)조부터는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B6 b)조부터는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 a)조 및 B6 a)조에서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또는 “물품이 A4에서 예상된 대로 인도된 때부터”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분배의 기준이 되는 시기를 물품의 인도시기와 연결시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각 규칙의 물품의 인도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용분배의 시기는 각 규칙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험의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비용의 분배시기는 물품의 인도시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규칙별로 지침문(guidance note), 물품의 인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A4조 및 비용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A6조와 B6조, 기타 모든 조항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당사자의 의무로서 중심으로 살펴보되,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Incoterms 2010에서 당사자의 의무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물품의 인도시기를 기준으로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간주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Incoterms 2010 규칙의 서문에서는, “인도(delivery)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전운송방식용 선적지규칙

선적지규칙(Shipment rules)은 합의된 선적지의 어떤 장소 또는 지점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으로서,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은 EXW, FCA, CPT, CIP규칙이다.

### 1) EXW규칙의 비용분배

EXW규칙의 경우, 물품에 관한 비용분배의 시점은 위험의 이전시기와 동일하게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인도장소(즉, 공장, 작업장, 창고 등)의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에서 물품이 수취용 차량에 적재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진 때”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 물품의 인도에 필요한 검사업무의 비용(예를 들면, 품질검사, 용적검사, 중량검사, 개수검사의 비용), ② 물품의 포장<sup>3)</sup>비용, ③ 화인표시비용, ④ 매수인의 물품인도의 수취에 필요한 매도인의 모든 통지비용, ⑤ 매수인의 보험취득에 필요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⑥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는 비용 등과 같은 비용이다.

반면,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 모든 강행적인 선적전검사의 비용(수출국 당국이 명령한 선적전검사, 수입국 당국이 명령한 선적전검사 포함), ② 매도인의 구내에서의 수취용 차량에의 적재비용, ③ 인도를 수취하였다는 적절한 증거(예를 들면 인수증 등)의 제공비용, ④ 매수인이 자신의 특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sup>4)</sup>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진 때에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④ 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나 인도의 수취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합의된 인도기일로부터 발생하는 물품의 창고료 및 보험료와 같은 추가비용, ⑤ 매도인이 필요로 하는 보안정보요건에 대한 매수인의 통지비용, ⑥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수출과 수입,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매도인의 모든 서류와 정보(보안관련정보 포함)제공에 따른 비용 또는 이의 취득을 위한 매도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 ⑦ 매도인의 구내에서 선적항 또는

3) Incoterms 2010 규칙의 서문에서는 “포장(packaging)이란 매매계약의 요건에 일치시키기 위한 물품의 포장과 운송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물품의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적지의 터미널(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까지의 사전운송비용 및 보험료, ⑧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출행정절차와 관련된 공적비용(㉓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에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부담한 비용, ㉕ 수출통관절차의 수행비용<sup>4)</sup>, ㉖ 수출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⑨ 물품의 보안통관에 필요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⑩ 선적항 또는 선적지의 터미널(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로부터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까지의 주운송비용(적재비용, 양륙비용 및 운송에 따른 모든 추가비용 포함) 및 보험료, ⑪ 환적비용과 같은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비용(물품이 타국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경우), ⑫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입행정절차와 관련된 공적비용(㉗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㉘ 수입통관절차의 수행비용, ㉙ 수입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⑬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이다.

## 2) FCA규칙의 비용분배

FCA규칙의 경우, 물품에 관한 비용분배의 시점은 위험의 이전시기와 동일하게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의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sup>5)</sup> 또는 기타의 자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로서,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운송수단 상에 적재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인도장소의 측면에서는 EXW규칙과 동일하다. 따라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FCA규칙을 EXW규칙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의 표와 같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4) 물품의 통관은 허가(licences), 증명(certificates), 영사송장(consular invoices), 면허(permits), 인가(authorization)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창고보관료, 세관신고 및 운송주선인의 서비스비용 혹은 보안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Ramberg, Jan, ICC Guide to Incoterms® 2010, ICC, 2011, p.82; 양정호, “Incoterms® 2010상 수출입 당사자의 보안관련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5, p.68.

5) Incoterms 2010 규칙의 서문에서는 “운송인(carrier)이란 운송이 계약되는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EXW규칙과 FCA규칙의 차이점

비용의 내용	EXW규칙	FCA규칙
① 매도인의 구내에서의 수취용 차량에의 적재비용	매수인	매도인
② 수출행정절차와 관련된 다음의 공적비용:		
㉗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에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부담한 비용	매수인	-
㉘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매수인	매도인
㉙ 수출통관절차의 수행비용	매수인	매도인
㉚ 수출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매수인	매도인
③ 수출국 당국이 명령한 선적전검사의 비용	매수인	매도인

한편, FCA규칙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기타 모든 경우에는, 물품이 양륙준비가 된 매도인의 운송수단 상에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이다. 즉, FCA규칙에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기타 지정된 장소(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 등)인 경우,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매도인의 지급비용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 물품의 인도에 필요한 검사업무의 비용(예를 들면, 품질검사, 용적검사, 중량검사, 개수검사의 비용), ② 수출국 당국이 명령한 선적전검사의 비용, ③ 물품의 포장비용, ④ 화인표시비용, ⑤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출행정절차와 관련된 공적비용(㉗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㉘ 수출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㉙ 수출통관절차의 비용)⑥, ⑥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운송과 수출 그리고 타국통과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매도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보안관련정보 포함)에 대한 매수인의 제공에 따른 비용 또는 이의 취득을 위한 매수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 ⑦ 매도인의 구내에서의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의 적재비용, ⑧ 매도인의 구내로부터 기타 지정된 장소(선적항 또는 선적지의 터미널; 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까지의 사전운송비용 및 보험

6) 수출입행정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사적인 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관료 등은 제외하고 수출이나 수입에 필수적인 결과로서 적용가능한 수출입법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공적인 비용만을 의미한다; 서정두, “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비용분담기준 비교”,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6, pp.86-87.

료, ⑨ 서류제공비용(㉑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상업송장, ㉒ 품질증명서·수량증명서·중량용적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 등 매매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일치의 증거, ㉓ 부두수취증과 같은 물품의 인도사실에 대한 통상적인 증거 등의 제공비용) 등과 같은 비용이다.

## (2) 매수인의 지급비용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 수입국 당국이 명령한 검사를 포함하는 모든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의 비용(수출국 당국이 명령한 선적전검사의 비용 제외), ② 매도인이 필요로 하는 보안정보요건에 대한 매수인의 통지비용, ③ 매수인이 자신의 특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㉔ 매수인이 운송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㉕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㉖ 매수인이 운송인의 명칭·필요한 경우 물품의 인도시기·운송방식·인도의 수취지점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창고료 및 보험료와 같은 모든 추가비용, ④ 매도인에 의한 매수인의 보험취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비용(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인도장소(선적항 또는 선적지의 터미널; 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륙비용, ⑥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매도인의 통지비용(㉗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매도인의 통지비용, 또는 ㉘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가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매도인의 통지비용), ⑦ 매도인에 의하여 제공된 부두수취증과 같은 인도의 증거의 수리비용, ⑧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륙수로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운송장, 도로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의 운송서류의 취득에 대한 매도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⑧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수입과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보안관련정보 포함)에 대한 매도인의 제공에 따른 비용 또는 이의 취득을 위한 매도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 ⑨ 인도장소(선적항 또는 선적지의 터미널; 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로부터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까지의 주운송비용(적재비용, 양륙비용 및 운송에 따른 모든 추가비용 포함)<sup>7)</sup> 및 보험료, ⑩ 환적비용과 같은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비용(물품이 타국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경우), ⑪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㉙ 타국통과물품의 운송을 위한 통관절차의 수행비용 및 ㉚ 수

7) 이러한 주운송비용은 FCA A3 a)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하거나 또는 상관행에 따라 매도인이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비용부담이다.

입행정절차와 관련된 공적비용(㉠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 수입통관절차의 수행비용, ㉢ 수입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이다.

### 3) CPT규칙의 비용분배

CPT규칙의 경우에는, FCA규칙과 비교해 볼 때,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FCA규칙과 동일하다. 따라서, CPT규칙에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기타 지정된 장소(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지장,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 등)인 경우, FCA규칙에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기타 지정된 장소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매도인의 지급비용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부터 ㉣까지는 FCA규칙과 동일, ㉤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 수출행정절차와 관련된 공적비용(㉦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 수출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 수출통관절차의 비용), ㉩ 인도 전에 타국통과물품의 운송을 위한 통관절차의 비용, ㉪부터 ㉬까지는 FCA규칙과 동일, ㉭ 인도장소(선적항 또는 선적지의 터미널; 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륙비용, ㉮ 인도장소(선적항 또는 선적지의 터미널; 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로부터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까지의 주운송비용(적재비용과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을 포함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sup>8)</sup>,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환적비용과 같은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비용), ㉯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매도인의 통지비용(㉺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매도인의 통지비용, ㉻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모든 통지비용), ㉼ 서

8) 기타 모든 비용은 예컨대 운송계약에 필요한 비용과 각종 surcharge나 T/S cost, In & Out charge 등이 운임 속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이러한 비용 등을 의미한다; 오세창, “Incoterms® 2010 Rules의 문제점과 대안”, 『무역상무연구』, 제 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8, p.35.

류제공비용(FCA규칙과 동일) 등과 같은 비용이다.

## (2) 매수인의 지급비용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과 ②는 FCA규칙과 동일, ③ 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㉑ 물품의 발송시기 및/또는 ㉒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목적지 내의 물품의 수령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비용, ④ 매수인이 자신의 특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㉑ 물품의 발송시기 및/또는 ㉒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목적지 내의 물품의 수령지점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창고료 및 보험료와 같은 모든 추가비용, ⑤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에 의한 매수인의 보험취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비용, ⑥ 보험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에 따른 비용(요청이 있는 경우), ⑦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 중의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및 요금(다만, 이러한 모든 비용과 요금, 양륙비용 및 환적비용과 같은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비용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매수인의 비용), ⑧ 인도장소(선적항 또는 선적지의 터미널; 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로부터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까지의 보험료 ⑨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의 수령비용, ⑩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수입과 최종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보안관련정보 포함)에 대한 매도인의 제공에 따른 비용 또는 이의 취득을 위한 매도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 ⑪ 매도인에 의하여 제공된 운송서류의 수리비용(그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 ⑫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㉓ 타국통과물품의 운송을 위한 통관절차의 수행비용 및 ㉔ 수입행정절차와 관련된 공적비용(㉕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㉖ 수입통관절차의 수행비용, ㉗ 수입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⑬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부두·창고·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이다.

## 4) CIP규칙

CIP규칙의 경우에는, CPT규칙과 비교해 볼 때, 매도인이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담보에 필요한 계약과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험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CPT과 동일하다.

**(1) 매도인의 지급비용**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⑨까지는 CPT규칙과 동일, ⑩ 주운송구간의 보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PT규칙과 동일, ⑪ CPT규칙과 동일, ⑫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담보의 증거의 제공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PT규칙과 동일하다.

**(2) 매수인의 지급비용**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④까지는 CPT규칙과 동일, ⑤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에 의한 매수인의 추가보험취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비용, ⑥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모든 추가보험의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매수인의 비용, ⑦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취득한 모든 추가보험의 비용, ⑧부터 ⑬까지는 CPT규칙과 동일하다.

**2. 전운송방식용 양륙지규칙**

양륙지규칙(Delivered rules)은 합의된 목적지의 어떤 장소 또는 지점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으로서, 목적지규칙(Destination rules), 도착지규칙(Arrival rules)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규칙으로서, DAT, DAP, DDP규칙의 D규칙이 이에 해당된다.

**1) DAT규칙**

DAT규칙의 경우, 물품에 관한 비용분배의 시점은 위험의 이전시기와 동일하게 “물품이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륙되고 합의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진 때”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9)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담보의 증거의 제공을 매도인의 의무로 한 것은 매수인이 인도장소의 합의된 인도지점으로부터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보험담보구간에서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순환,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8권 제1호, 2012.3, p.348.

### (1) 매도인의 지급비용

우선,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⑨까지는 CPT규칙과 동일, ⑩ 선적항 또는 선적지의 터미널로부터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까지의 주운송비용(적재비용, 환적비용과 같은 인도 전에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비용) 및 보험비용, ⑪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양륙비용, ⑫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모든 통지비용, ⑬ 서류제공비용(㉔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상업송장, ⑭ 품질증명서·수량증명서·중량용적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 등 매매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일치의 증거, ⑮ 화물인도 지시서 및/또는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륙수로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운송장, 도로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의 물품의 인도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 등과 같은 비용이다.

### (2) 매수인의 지급비용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과 ②는 CPT규칙과 동일, ③ 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㉔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 및/또는 ④ 지정된 터미널에서의 인도의 수취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비용, ④ 매수인이 자신의 특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㉔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 및 수입통관절차의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④ 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 및/또는 지정된 터미널에서의 인도의 수취지점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부담한 물품의 창고료 및 보험료와 같은 모든 추가비용, ⑤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에 의한 매수인의 보험취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비용, ⑥ 보험취득을 위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한 비용(요청이 있는 경우), ⑦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취득한 모든 추가보험의 비용, ⑧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의 수령비용, ⑨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수입과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보안관련정보 포함)에 대한 매도인의 제공에 따른 비용 또는 이의 취득을 위한 매도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 ⑩ 매도인에 의하여 제공된 인도서류의 수리비용, ⑪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㉔ 타국통과물품의 운송을 위한 통관절차의 수행비용 및 ④ 수입행정절차와 관련된 공적비용(㉔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㉕ 수입통관절차의 수행비용, ㉖ 수입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⑫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이다.

## 2) DAP규칙

DAP규칙의 경우, 물품에 관한 비용분배의 시점은 위험의 이전시기와 동일하게 “지정된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에서 물품이 양륙준비가 된 도착하는 운송수단 상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진 때”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매도인의 지급비용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⑨까지는 DAT규칙과 동일, ⑩ 선적항 또는 선적지의 터미널로부터 지정된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까지의 주운송비용(적재비용, 환적비용과 같은 인도 전에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비용) 및 보험비용, ⑪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⑫와 ⑬은 DAT규칙과 동일하다.

### (2) 매수인의 지급비용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과 ②는 DAT규칙과 동일, ③ 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㉔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 및/또는 ㉕ 지정된 목적지 내의 인도의 수취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비용, ④ 매수인이 자신의 특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㉖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가의 취득 및 수입통관절차의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㉗ 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 및/또는 지정된 목적지 내의 인도의 수취지점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부담한 물품의 창고료 및 보험료와 같은 모든 추가비용, ⑤부터 ⑦까지는 DAT규칙과 동일, ⑧ 지정된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양륙비용(이러한 양륙비용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한다<sup>10)</sup>), ⑨부터 ⑫까지는 DAT규칙의 ⑧부터 ⑪까지와 동일, ⑬ 지정된 목적지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이다.

10) DAP규칙의 지침문(Guidance Note)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륙에 관련된 비용을 운송계약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으로부터 그러한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DDP규칙

DDP규칙의 경우에는, DAP규칙과 비교해 볼 때,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매도인이 수입국 당국이 명령한 모든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입통관과 수입국당국에 의한 선적전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DAP규칙과 동일하다.

## 3. 해상운송전용 선적지규칙

선적지규칙으로서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은 FAS, FOB, CFR과 CIF규칙이다.

### 1) FAS규칙

FAS규칙의 경우, 물품에 관한 비용분배의 시점은 위험의 이전시기와 동일하게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시한 적재지점(있는 경우)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예를 들면, 부두 또는 부선 상)에 그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이 놓여지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이 조달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⑦까지는 FCA규칙과 동일, ⑧ 매도인의 구내로부터 선적항까지의 사전운송비용(선적항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륙비용 포함) 및 보험료, ⑨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및 부선료(lighterage charge), ⑩ 서류제공비용(㉗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상업송장, ㉘ 품질증명서·수량증명서·중량용적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 등 매매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일치의 증거, ㉙ 물품의 인도사실에 대한 통상적인 증거 등의 제공비용) 등과 같은 비용이다.

반면,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과 ②는 FCA규칙과 동일, ③ 매수인이 자신의 특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㉚ 매수인이 본선명, 적재지점 및 필요한 경우 합의된 기간 내의 선택된 인도시기의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㉛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취할 수 없거나, 또는 합의된 기간 내의 선택된 인도시간 보다 일찍 화물인수를 마감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창고료 및 보험료와 같은 모든 추가비용, ④ 매도인에 의한 매수인의 보험취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비용(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선측(부두 또는 부선)으로부터 본선에의 적재비용(*loading charges*)을 포함하는 목적항까지의 주운송비용(양륙비용 및 운송에 따른 모든 추가비용 포함)<sup>11)</sup> 및 보험료, ⑥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매도인의 통지비용(㉓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매도인의 통지비용, 또는 ㉒ 본선이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매도인의 통지비용), ⑦ 매도인에 의하여 제공된 인도의 증거의 수리비용, ⑧ 인도의 증거가 운송서류가 아닌 한,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륙수로운송서류 등의 운송서류의 취득에 대한 매도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⑨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수입과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보안관련정보 포함)에 대한 매도인의 제공에 따른 비용 또는 이의 취득을 위한 매도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 ⑩ 환적비용과 같은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비용(물품이 타국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경우), ⑪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㉑ 타국통과물품의 운송을 위한 통관 절차의 수행비용 및 ㉒ 수입행정절차와 관련된 공적비용(㉑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㉒ 수입통관절차의 수행비용, ㉓ 수입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⑫ 목적항으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이다.

## 2) FOB규칙

FOB규칙의 경우, 물품에 관한 비용분배의 시점은 위험의 이전시기와 동일하게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시한 적재지점(있는 경우)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상에 그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이 놓여지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이 조달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매도인의 지급비용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⑧까지는 FAS규칙과 동일, ⑨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부선료(*lighterage charge*) 및 선측으로부터 본선에의 적재비용(*loading charges*), ⑩ 서류제공비용(㉒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상업송장, ㉓ 품질증명서·수량증명서·중량용적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 등 매매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일치의 증거, ㉔ 본선수취증과 같은 물품의 인도사실에 대한 통상적인 증거 등의 제공비용) 등과 같은 비용이다.

11) 이러한 주운송비용은 FAS A3 a)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하거나 또는 상관행에 따라 매도인이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비용부담이다.

## (2) 매수인의 지급비용

반면,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④까지는 FAS규칙과 동일, ⑤ 본선의 선창내에서의 적부비용(stowage)를 포함하는 선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목적항까지의 주운송비용(양륙비용 및 운송에 따른 모든 추가비용 포함)<sup>12)</sup> 및 보험료, ⑥과 ⑦은 FAS규칙과 동일, ⑧ 인도의 증거가 운송서류가 아닌 한,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륙수로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의 운송서류의 취득에 대한 매도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⑨부터 ⑫까지는 FAS규칙과 동일하다.

## 3) CFR규칙

CFR규칙의 경우에는, FOB규칙과 비교해 볼 때,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운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FOB규칙과 동일하다.

### (1) 매도인의 지급비용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⑧까지는 FOB규칙과 동일, ⑨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부선료(lightage charge), 본선에의 적재비용(loading charges) 및 본선의 선창내에서의 적부비용(stowage charge)를 포함하는 선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목적항까지의 주운송비용(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합의된 목적항에서의 모든 양륙비용을 포함하는 운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비용), ⑩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모든 통지비용, ⑪ 서류제공비용(㉓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상업송장, ㉔ 품질증명서·수량증명서·중량용적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 등 매매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일치의 증거, ㉕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륙수로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 합의된 목적항을 위한 통상적인 운송서류의 즉시 제공비용) 등과 같은 비용이다.

12) 이러한 주운송비용은 FOB A3 a)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하거나 또는 상관행에 따라 매도인이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비용부담이다.

## (2) 매수인의 지급비용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과 ②는 FOB규칙과 동일, ③ 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 물품의 선적시기 및/또는 ㉡ 지정된 목적항 내의 물품의 수령지점에 대한 충분한 통지비용, ④ 매수인이 자신의 특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 물품의 선적시기 및/또는 ㉡ 지정된 목적항 내의 물품의 수령지점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창고료 및 보험료와 같은 모든 추가비용, ⑤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에 의한 매수인의 보험취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비용, ⑥ 보험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에 따른 비용(요청이 있는 경우), ⑦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 중의 물품에 관한 비용과 요금(다만, 이러한 모든 비용과 요금,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륙비용 및 환적비용과 같은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비용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매수인의 비용) ⑧ 선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목적항까지의 보험료, ⑨ 지정된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의 수령비용, ⑩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수입과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보안관련정보 포함)에 대한 매도인의 제공에 따른 비용 또는 이의 취득을 위한 매도인의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 ⑪ 매도인에 의하여 제공된 운송서류의 수리비용(그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 ⑫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 타국통과물품의 운송을 위한 통관절차의 수행비용 및 ㉣ 수입행정절차와 관련된 공적비용(㉤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의 취득비용, ㉥ 수입통관절차의 수행비용, ㉦ 수입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⑬ 목적항으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이다.

## 4) CIF규칙

CIF규칙의 경우에는, CFR규칙과 비교해 볼 때, 매도인이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담보에 필요한 계약과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험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CFR과 동일하다.

### (1) 매도인의 지급비용

우선, 매도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⑧까지는 CFR규칙과 동일, ⑨ 주운송구간의 보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FR규칙과 동일, ⑩ CFR규칙과 동일, ⑪ 보험증권 또는 기

타 보험담보의 증거의 제공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FR규칙과 동일하다.

## (2) 매수인의 지급비용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서, ①부터 ④까지는 CFR규칙과 동일, ⑤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에 의한 매수인의 추가보험취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비용, ⑥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모든 추가보험의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매수인의 비용, ⑦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취득한 모든 추가보험의 비용, ⑧부터 ⑬까지는 CFR규칙과 동일하다.

## IV.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의 문제점

### 1. C규칙에서의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적항 또는 선적지에서 이전하지만 목적항 또는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비용의 지급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CPT, CIP, CFR 및 CIF규칙의 모든 C규칙에서는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 중의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과 요금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을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모든 C규칙의 경우,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의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sup>13)</sup>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단순히 운송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이러한 비용의 부담을 결정한다면,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매도인이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전순환, “Incoterms 2010의 운송계약조항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2.4, p.327.

### 1) 목적항 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의 물품에 관한 비용

인도장소의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CFR과 CIF규칙의 경우) 또는 물품이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CPT와 CIP규칙의 경우)의 운송 중의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과 요금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과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인도장소의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의 분배점은 원칙적으로 인도장소의 합의된 인도지점인 반면, 예외적으로 C규칙의 각각의 A4조에 따라 인도장소의 합의된 인도지점(있는 경우)으로부터 지정된 목적항(또는 목적지)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목적항(또는 목적지)의 어떤 지점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한 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의 분배점은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어떤 지점까지 연장된다. 즉, 합의된 인도지점(CFR과 CIF규칙의 경우 본선의 선상)에서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물품이 인도된 후부터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어떤 지점까지 운송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송비용을 제외한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운송비용을 제외한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물품이 인도된 후부터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어떤 지점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예를 들면 결빙(ice), 결빙 또는 기타 기상조건(악천후)에 의한 장애(hindrances because of ice or other weather conditions), 좌초(strandings), 충돌(collisions), 혼잡(congestion), 노동쟁의(labor disturbances), 동맹파업(strikes), 정부명령(government orders or directions), 전쟁(war)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warlike operations) 등 운송인이 예견할 수 없는 선적 또는 발송 후의 우발사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환적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sup>14)</sup>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물품의 인도 또는 선적 이후의 우발사건 또는 기타 사건의 결과로서 운송인에 의하여 부과되는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14) Incoterms 2000 Introduction 9.3; Ramberg, Jan.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Publishing S.A., 1999, pp.116 and 61; 전순환, 상계 “Incoterms 2010의 운송계약조항에 관한 연구”, p.327.

규정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고,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한편, C규칙에서는 통상적으로 “운임선지급(freight prepaid)”의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매도인(송화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신용을 부여받아 “운임후지급(freight collect)”의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러한 운임(또는 운송비)의 지급의무는 C규칙에서 당연히 매도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운임(또는 운송비)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 2)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의 양륙비용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CPT와 CIP규칙의 경우) 또는 합의된 목적항에서의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양륙비용(CFR과 CIF규칙의 경우)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C규칙의 각각의 A3 a)조에 따라 물품이 인도장소의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어떤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양륙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양륙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양륙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양륙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3) 타국통과물품의 운송비용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CPT, CIP, CFR 및 CIF규칙의 경우)은 모든 C규칙의 A6조 및 B6조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품이 인도장소의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직항의 운송수단이 없어서 중간항(타국)을 통과하여 운송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그 중간항(타국)에서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환적비용과 같이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은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 비용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다.<sup>15)</sup>

즉, C규칙의 각각의 A3 a)조에 따라 물품이 인도장소의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어떤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조건과 통상적인 항로에 의한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통상적인 조건과 통상적인 항로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간항(타국)에서의 환적비용과 같은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환적비용과 같은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로,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환적비용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체결한 통상적인 조건과 통상적인 항로에 의한 운송계약에 환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환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매도인이 체결한 통상적인 조건과 통상적인 항로에 의한 운송계약에 환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환적비용은 다음과 같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첫째, 매도인이 체결한 통상적인 조건과 통상적인 항로에 의한 운송계약에 환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적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 매도인이 체결한 통상적인 조건과 통상적인 항로에 의한 운송계약의 조건에 환적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환적이 운송계약에서 규정된 통상적인 항로에 의한 환적이 아니라, 결빙 또는 기타 기상조건(악천후)에 의한 장애, 좌초, 충돌, 혼잡, 노동쟁의, 동맹파업, 정부명령,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등 운송인이 예견할 수 없는 선적 또는 발송 후의 우발사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환적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환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2. DAP와 DDP규칙에서의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DAP와 DDP규칙의 경우, 이들 규칙의 지침문(Guidance Note)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륙할 준비가 된 도착하는 운송수단 위에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라는 규정

15) 참고로, 모든 D규칙의 경우에는 D규칙의 A6조 및 B6조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적용할 수 있는 경우)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에 따라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륙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 즉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양륙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규칙의 A6조 및 B6조에서는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고,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며”, 지침문(Guidance Note)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륙에 관련된 비용을 운송계약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으로부터 그러한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6)</sup>

이와 같이, DAP와 DDP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더라도, 이러한 양륙비용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러한 양륙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지급한 양륙비용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DAP와 DDP규칙의 매도인은 자신이 지급할 필요가 없는 양륙비용을 쓸데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DAP와 DDP규칙에 있어서 매도인이 체결하는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에 양륙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도인이 어쩔 수 없이 양륙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러한 양륙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① 매도인이 자신이 부담한 양륙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② 목적지의 인도장소가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양륙비용이 포함된 DAT규칙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품가격에 양륙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러한 양륙비용은 궁극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 3.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인코텀즈 2010의 모든 규칙의 B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① 매수인의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의 지정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모든 추가비용(FCA), ② 매수인의 물품인도의 수취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모든 추가비용[㉔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진 때에 매수인의 물품인도의 수취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거나(EXW규칙), ㉕ 매수인에 의

16)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비용부담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C규칙과 DAP·DDP규칙은 동일하지만, C규칙의 이러한 비용부담의 결정은 매도인의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체결의무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DAP와 DDP규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DAT규칙의 경우에는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의 양륙비용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의 물품의 수취의무를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거나(FCA), ㉔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취할 수 없거나 또는 B7에 따라 통지된 시간보다 일찍 화물인수를 마감함으로써 발생된(FAS, FOB) 모든 추가비용], ㉓ 매수인의 수입통관의무 또는 수입허가나 기타 공적 인가의 취득에 대한 협조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거나 발생된 모든 추가비용[㉑ 매수인의 수입통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거나(DAT, DAP), ㉕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가의 취득에 대한 매수인의 협조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된(DDP) 모든 추가비용], 또는 ㉔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㉑ B7에 따른 매수인의 적절한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거나(EXW, FCA, DDP, FAS, FOB), ㉕ B7에 따른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거나(DDP), ㉖ 발송을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B7에 따른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거나(CPT, CIP), ㉗ 선적을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B7에 따른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거나(CFR, CIF), 또는 ㉘ B7에 따른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DAT, DAP)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운송인의 지정의무, 물품인도의 수취의무, 수입통관의무 또는 수입허가취득에 대한 협조의무, 매도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 매수인의 특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의 지급의무는 물품이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의 충당이 전제되어야 하며<sup>17)</sup>, 이러한 추가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비용의 이전을 지연시킬 소지가 매수인에게 주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러나, DAT와 DAP규칙의 경우 수입통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DAT와 DAP규칙의 경우, 매수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다른 규칙(EXW와 DDP규칙 제외)과 달리, 매수인이 수입물품을 통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수입물품을 통관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지점에 물품을 도착시킬 수 없게 된다.<sup>19)</sup> 예를 들면, 물품이 합의된 목적지점(DAT의 경우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 DAP의 경우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보다 빠른 지점에서 세관을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물품이 세관에 유치되어 합의된 목적지점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DAT와 DAP규칙에서는 수입통관을 매수인의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과 비용도 매

17) 전순환, "Incoterms 2010의 DAP규칙의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공정무역연구』, 통권 제43호,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국제공정무역학회, 2012.6, p.121.

18) 박남규, "Incoterms 2010과 CISG",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2, p.47.

19) 전순환,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조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5, p.188.

수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DAT와 DAP규칙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입통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러한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수인의 수입통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물품이 세관에 유치됨으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완료되더라도, 합의된 목적지점에서 물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매도인으로서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매수인의 수입통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추가비용뿐만 아니라 합의된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DAT 또는 DAP규칙에 “수입통관포함(cleared for import)”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DAT 또는 DAP규칙에 “수입통관포함(cleared for import)”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것은 관세, 조세 또는 기타 요금은 여전히 매수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수입통관의무만을 매도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수입통관의무를 이행한다면, 물품이 세관에 유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의 방지뿐만 아니라, 합의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할 매도인의 의무도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 및 B6조에서는 물품의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물품의 인도 전까지의 비용지급의무는 매도인에게 물품의 인도 후부터의 비용지급의무는 매수인에게 각각 부담시키고 있다. 즉, 모든 규칙의 A6조 및 B6조에서는 수출과 수입통관절차의 비용, 수출과 수입관세·조세 및 기타 요금, 적재비용, 양륙비용, 타국통과물품의 운송비용, 운송 중의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과 요금,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 매도인의 보험계약체결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비용, 매수인의 요청으로 취득된 추가보험의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인 A6조 및 B6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도출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PT, CIP, CFR 및 CIF규칙의 모든 C규칙에서는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 중의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과 요금은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의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매도인의 운송계약체결의무에 따라 운송

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된다.

즉,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물품이 인도된 후부터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어떤 지점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예를 들면 결빙 또는 기타 기상조건(악천후)에 의한 장애, 좌초, 충돌, 혼잡, 노동쟁의, 동맹파업, 정부명령,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등 운송인이 예견할 수 없는 선적 또는 발송 후의 우발사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환적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인 조건의 “운임선지급(freight prepaid)”이 아니라 “운임후지급(freight collect)”의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러한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운임(또는 운송비)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C규칙의 성질상, 물품이 인도장소의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어떤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조건과 통상적인 항로에 의한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직항의 운송수단이 없어서 중간항(타국)에서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환적비용과 같이 타국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은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둘째, DAP와 DDP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목적지에서의 모든 양륙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더라도, 이러한 양륙비용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러한 양륙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지급한 양륙비용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DAP와 DDP규칙의 매도인이 이러한 양륙비용을 쓸데없이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① 매도인이 자신이 부담한 양륙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② 목적지의 인도장소가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양륙비용이 포함된 DAT규칙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FOB규칙의 비용분기점은 선적항의 본선의 선상에 적재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본선에 의 적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운임속에는 통상적으로 본선에의 적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운임속에 이러한 적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적재선주무책(FI; Free In)” 또는 “적재양륙선주무책(FIO; Free In and Out)” 등으로 용선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물품이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특히, 수입통관이 매수인의 의무로 되어 있는 DAT와 DAP규칙의 경우, 물품이 합의된 목적지점(DAT의 경우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 DAP의 경우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보다 빠른 지점에서 세관을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뿐만 아니라 물품이 세관에 유치되어 합의된 목적지점에 도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DAT 또는 DAP규칙에 “수입통관포함(cleared for import)”이라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매도인이 수입통관의무를 이행한다면, 물품이 세관에 유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의 방지뿐만 아니라, 합의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할 매도인의 의무도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의 분배와 관련한 상기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분쟁 또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실제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박남규, “Incoterms 2010과 CISG”,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2.
- 서정두, “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비용분담기준 비교”,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6.
- 양정호, “Incoterms® 2010상 수출입 당사자의 보안관련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5.
- 오세창, “Incoterms® 2010 Rules의 문제점과 대안”,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8, p.35.
- 전순환,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사)한국무역연구원, 2010.12.
- \_\_\_\_\_,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8권 제1호, 2012.3.
- \_\_\_\_\_, “Incoterms 2010의 운송계약조항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2.4.
- \_\_\_\_\_,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조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5.
- \_\_\_\_\_, “Incoterms 2010의 DAP규칙의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공정무역연구」, 통권 제43호,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국제공정무역학회, 2012.6, p.121.
- 전순환역, 인코텀즈 2000에 대한 ICC지침, 두남출판사, 2002.
- Ramberg, Jan.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Publishing S.A., 1999.
- Ramberg, Jan, ICC Guide to Incoterms® 2010, ICC, 2011.
- ICC, Incoterms 2000.
- ICC, Incoterms 2010.

## ABSTRACT

A Study on the Clauses of Allocation of Costs in  
Incoterms 2010

Soon-Hwan Jeon\*

Incoterms 2010 Rules consist of 11 rules. The 11 rules are presented in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n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The each rule of Incoterms 2010 rules has the guidance note, 10 articles(A1~A10) in relation to the seller’s obligations and 10 articles(B1~B10) in relation to the buyer’s obligations.

The A6 and B6 of Incoterms 2010 rules, likewise previous Incoterms rules, have the article of allocations of costs. These articles of Incoterms 2010 rules provide the allocation of cost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ccording to These A6 and B6, in principle, the seller must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and the buyer must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analyze the clauses of allocation of costs in Incoterms 2010 and to provide the problems of the clauses.

**Key Words** : Incoterms 2010, Allocation of Costs, ICC, Trade Terms

---

\* Professor, Dept. of Chinese Trade and Commerce, Joongbu University.